

노인인권보호 지침(노인학대폭력 예방)



온양정 애요양원
(www.jungae.kr)

<제 목 차 례>

1. 노인학대 유형	1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2
3. 시설 수급자 학대예방	3
4. 수급자(이용자) 학대사례 및 대응 지침	4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4
2) 조사와 사정	5
3) 학대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	7
4) 평가와 사후조치	8
5. 노인학대의 법적근거 및 처벌	8
6. 노인 학대 예방 10대 수칙	11
7. 예방절차	12
8. 대처방안	13
1)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13
2) 노인학대가 의심 될 때	13
3) 노인학대 신고 요령	14
4) 신고의무자 및 처벌 교육	14
① 신고의무자	14
② 처벌조항(과태료)	14
5) 학대 발생시 센터와 협조사항	15
6) 노인학대 대처방안으로 노인학대 발견시 적극적 신고 요청	15
9. 노인인권보호 지침	16
10. 노인보호전문기관	20

노인학대폭력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지침

1. 노인학대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음
-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지침상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부록 3)을 참조.

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유기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노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2. 각 기관의 역할과 임무

-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강화, 노인 학대 전문 인력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등

2) 시·도

- 시설에 대한 업무지도 및 감독,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등

3) 시·군·구

- 학대피해 노인 및 보호자 또는 학대행위자의 신분조회 요청 등에 대한 협조,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관련 위원회 설치 운영, 격리보호가 필요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5 제1항 제2호의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학대피해 노인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실시, 피학대노인의 전원 조치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행정조치

4) 온양정애요양원

- 시설 내 학대 예방 및 학대사례 조기 발견과 신속한 조사, 피해노인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보호서비스 제공,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실시,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종사자 및 생활노인 교육,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학대관련 전문조직과의 협력.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내용(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의16)
 -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교육
 - 노인학대 발견시 신고요령
 - 피해노인 보호절차
 - 교육시간은 1시간이상으로 한다.
 - 본 시설은 집합교육 또는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 인터넷 강의로 한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시설은 시설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4. 수급자(이용자) 학대사례 및 대응 지침

1) 학대사례의 발견과 신고

- 시설은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건의함, 신고함 등과 같은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위원회에 생활노인 대표 또는 가족을 1인 이상 참여시켜, 노인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

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생활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노인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모든 시설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생활노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노인이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노인이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전화 129), 시·군·구 노인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생활노인이 동료 생활노인의 학대 위험 또는 학대를 당하는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촉탁의 또는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노인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의 생활노인 학대와 관련된 정보를 접한 노인복지상담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의 관계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시설의 학대의심 사례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설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에 의거하여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운영자는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노인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노인 유기 및 노인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노인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시설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2) 조사와 사정

-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 시설의 장, 사무국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부록 3의 ‘노인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 기준을 참고하여, 노인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피해노인의 신변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노인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생활노인과 학대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한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한다.
- 정확한 자료수집을 위하여 이 지침에 제시된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 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노인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 피해노인,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과 사무국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될 경우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영양사, 생활지도원 등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노인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노인학대 예방센터 상담원, 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

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시설의 장은 현장조사가 완료와 함께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학대 사례의 특성, 학대의 정도, 학대의 원인,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 학대행위자가 지닌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학대사례에 대한 정확한 판정과 피해노인의 후속 보호조치, 학대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개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 접수된 사례가 학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의 사례판정과 관련된 절차를 준용한다.
- 학대 사례를 판정함에 있어서 가능한 피해자와 학대행위자 및 제 3자의 상담 등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며, 어느 한쪽의 의견만으로 학대여부 및 그 심각성을 평가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시설은 학대 사례 현황과 조치결과를 분기별로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노인의 삶의 질에 중대한 위험이 초래된 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조사완료와 함께 그 사실을 시군구에 조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를 받은 시·군·구는 시·도에 분기별 보고(시·도는 반기별로 복지부에 보고)함과 동시에 학대 사례에 대한 시설의 보호조치의 계획과 실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3) 학대 수급자에 대한 보호조치

- 시설의 장은 피해 노인,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 요인의 제거, 피해 노인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하여야 한다.
-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생활노인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 지지, 학대 행위자와 피해노인의 격리와 특별보호서비스, 수발·영양·재활·사회적 활동 등의 서비스 개선, 의료적 처치, 법률적 상담과 법률적 조치, 노인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 노인보호전문기관, 응급센터, 경찰, 의료, 법률, 행정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과 긴밀

하게 협력하여 학대 사례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설의 인사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시설의 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 결정한다.
-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4) 평가와 사후조치

- 시설의 장은 학대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사례평가의 경우 피학대 노인과 가족 등 관계인이나 대리인, 시설종사자, 시설운영위원과 외부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을 참석시켜야 한다.
-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노인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할 수 있다.
- 노인의 안전 유지 및 학대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노인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노인학대의 법적근거 및 처벌

「노인복지법」

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9)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9)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2004.1.29>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

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제39조의10(조사 등)

- 1)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사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9>
- 2)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신설 2004.1.29>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호(상해)의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4조(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의 14(요양보호사 자격의 취소)

제39조의9를 위반하여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3항 제3호를 장기요양 종사자 등이 위반할 시 1차위반: 경고 2차위반: 지정취소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

- 3)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4) 피해자 의사존중 원칙(9조)으로 강제성은 없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1. 사법경찰관의 조치
 - 1) 폭력행위의 제지 및 범죄수사
 - 2) 피해자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 인도(피해자동의 필요)
 -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의 의료기관 인도
 - 4) 폭력행위의 재발 시 감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8조에 의거)
- 2. 검사의 사건송치, 임시조치 청구가능
- 3. 법원의 조사, 심리, 임시조치, 보호처분 가능
- 4. 임시조치의 내용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 3) 의료기관 기타 요양소에의 위탁
 - 4)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형법 1995년>

제257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1조(유기, 존속유기)

-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 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6. 노인 학대 예방 10대 수칙

- 1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 2 건강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 3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하십시오.
- 4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마십시오.
- 5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십시오.
- 6 노인이 되었다고 도움 받기보다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 하십시오.
- 7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하십시오.
- 8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십시오.
- 9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10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하십시오.



7. 예방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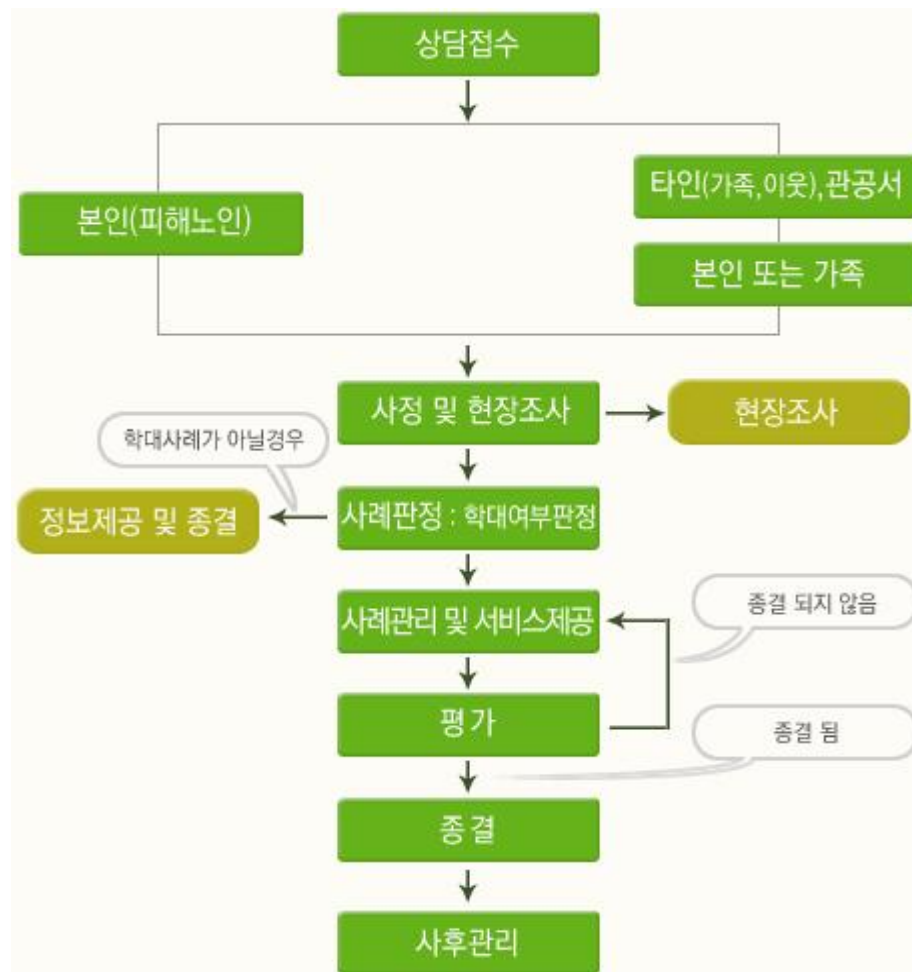

1. 건강유지를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
2. 경제적인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한 유지한다
3. 자녀와의 관계보다는 다른 사회적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진다
 - ① 사회적 교류를 유지하라 (친구의 숫자를 늘려라/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한다)
 - ② 비록 이사할 지라도 옛 친구나 이웃과의 만남을 유지한다
 - ③ 친구들을 당신의 집에 초대한다
4. 도움받기 보다는 도움을 주는 일을 많이한다
5. 지금하고 있는 활동을 중단하지 말고 지속한다
 - ① 지역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② 자원봉사를 한다
6. 과거에 집착하기보다 세상의 변화를 이해하려고 한다
7. 자녀와 갈등을 갖지 않도록 가정의 화목에 최선을 다한다
8. 어떠한 경우든 노인을 학대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대받는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 자책하기보다 도움을 청한다
9. 학대요인을 피한다
 - ① 선택할 수 있는 주거 형태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다.
 - ② 정기적으로 유언장을 검토한다.
 - ③ 연금이나 국가보조금이 당신의 은행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조처를 취한다.
 - ④ 노인부양을 이유로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다.
 - ④ 폭력적 행위나 알코올중독의 경험이 있는 사람과는 · 동거하지 않는다.
 - ⑤ 함부로 문서에 서명하지 않는다. 신임하는 사람이 · 체크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문서에도 서명하지 않는다.





8. 대처방안

1) 노인보호전문기관 신고



2) 노인학대가 의심 될 때

- ※ 어르신의 심리적, 정신적, 육체적 안정을 도모한다.
- ※ 어르신께 정서적 지지를 해 드린다.
- ※ 어르신과 단독으로 얘기를 나누어 본다.
- ※ 어르신께 어르신의 안전에 대해 여쭙는다.
- ※ 어르신께 이용할 수 있는 지지자원이 있음을 알린다.
- ※ 어르신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들인다.
-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을 권한다.



3) 노인학대 신고 요령

※ 언제

- 주변에서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했을 때
- 본인이 학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 무엇을

- 피해 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 어르신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 어떻게

- 전화: 신고 및 상담(1577-1389), 041-534-9222~3
- 내방: 충남 아산시 온천1동 232-2 노인학대예방센터

※ 접수방법

- 연중 24시간 긴급전화 1577-1389 운영
- 노인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신고접수
- 직접 방문 상담 접수
- 이동상담, 가정방문 상담 접수
- 서신에 의한 접수
- 병원, 보건소, 재가복지센터, 기타 전화상담 센터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타 기관, 타 상담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사례 접수

※ 신고자의 이름은 비밀로 합니다.



4) 신고의무자 및 처벌 교육

① 신고의무자

-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6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처벌조항(과태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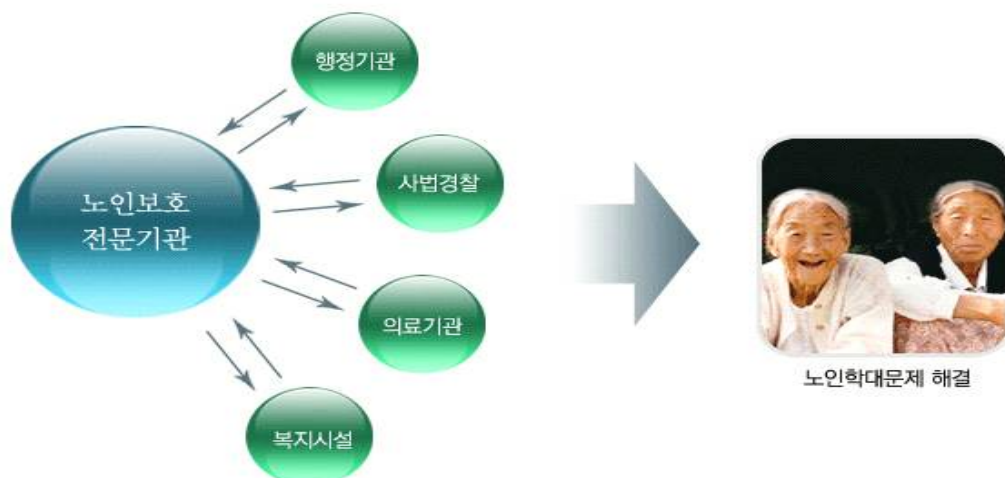
- 「노인복지법」 제61조의2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학대 발생시 센터와 협조사항

사법경찰	· 학대 신고시 현장출동 · 112에 신고 된 사례를 노인학대예방센터에 의뢰 · 센터에 접수 된 신고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시 동행 협조 · 센터로부터 의뢰 받은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조사이후 조사서 사본 센터에 송부
의료인	· 노인학대 조기발견, 센터나 경찰에 신고 · 노인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 소견 및 증언 진술 · 노인학대로 의심되는 노인에게 종합적 의료서비스 제공
노인복지시설	· 노인학대 조시발견, 센터나 경찰에 신고 · 피해노인의 치료적 개입 및 협조 · 피해노인의 생활기록 등 관련자료 제공 · 학대행위자의 예방, 치료계획을 위한 지원 ·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교육지원 · 종사자 교육프로그램 실시
법률기관	· "노인에 대한 최선의이익의 우선 원칙"에 따른 소송진행 · 피해노인의 법률적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에 대한 긴밀한 협조 · 행위자 처벌 및 보호처분을 포함한 판정, 후견인의 지정, 가족으로부터 노인 격리
시.도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학대노인의 행정적 조치 (의료기관 치료의뢰/노인복지시설에 입소 의뢰)
시.군	· 위기가정 SOS상담소 지침과 연계하여 적극지원 · 센터 상담관련자의 신분조회 요청에 협조 · 보호조치를 의뢰받은 노인에 대한 행정적 조치 실시 · 빈곤으로 인한 노인학대발생 가정 및 부양가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피해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

6) 노인학대 대처방안으로 노인학대 발견시 적극적 신고 요청

노인학대 문제해결은 통합적인 신고체계의 구축과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통합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가능하다.



9. 노인인권보호 지침

1) 목적

이 지침은 노인복지시설(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시설과 단기보호시설을 말함)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2) 시설생활어르신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존경과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 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 개인 소유 재산과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 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 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3) 시설 생활 어르신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정서적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착취 또는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관련법률과 지침에 따라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 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이나 구속을 해서는 안 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하거나 구속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구속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 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 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의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10. 노인보호전문기관

시도	주소	연락처	팩스
중앙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82-10 (성춘빌딩 2층)	02)3667-1389	02)2634-5023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02)3472-1389	02)523-1043
서울북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0길 23	02)921-1389	02)921-1391
부산동부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274번길 3-5 2층	051)468-8850	051)468-8851
부산서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405번길 85	051)867-9119	051)865-0446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8, 3층	053)472-1389	053)476-1081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032)426-8792~4	032)426-8794
광주	광주광역시 남구 사직안길 18	062)655-4155~7	062)655-4158
대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8 (더포엠 II 102호)	042)472-1389	042)472-1392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90	052)265-1389	052)257-1889
경기남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183번길 20 (성남실내체육관 3층)	031)736-1389	031)735-3795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로 136번길 7	031)821-1461	031)821-2246
경기서부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 252번길 26(성곡 새마을금고 오정지점 2층)	032)683-1389	032)683-1388
강원도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 110번지 2층	033)253-1389	033)242-1389
강원동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48	033)655-1389	033)655-0512
충북	충북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438번길 39-17(충북재활의원 3층)	043)259-8120~2	043)259-8127
충북북부	충청북도 충주시 예성로 76	043)846-1380~2	043)846-1389
충남	충청남도 아산시 번영로206번길 42	041)534-1389	041)534-9224
충남남부	충청남도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9,2층	041)734-1389	041)735-1489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063)273-1389	063)273-1287
전북서부	전북 군산시 진포로 151번지 군장대학교 평생교육원 3층	063)443-1389	
전남	전남 순천시 저전길 84	061)753-1389	061)742-3079
전남서부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5길 전라남도노인회관 4층	061)281-2391	061)281-2392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동빈1가 69-4(기쁨의교회복지관 208호)	054)248-1389	054)232-5677
경북서북부	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본소)	054)655-1389	054)655-1391
	경북 김천시 평화동 12길 10 2층(분소)	054)436-1390	054)436-1289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북4길 15 (금강노인복지관 2층)	055)222-1389	055)221-8449
경남서부	경상남도 진주시 문산읍 월아산로 1098 2층	055)754-1389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관덕로7길 3	064)757-3400	064)757-1389